

의안 번호	2035	【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<b>심사 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2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16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지대장(구 농지원부)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관리의 효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의 농지대장 작성·비치·관리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부를 변경·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변경·추가(별표 2)  
(「농지법」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사무 변경·추가)
  - 가) 농지대장의 작성·비치·관리(추가)
  - 나) 농지대장의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(추가)
  - 다) 농지대장의 열람·등본 교부(기존)
  - 라) 자경증명의 발급(추가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농지법」 제49조, 제49조의2, 제50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대장(구 농지원부)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농지대장 작성·비치·관리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농지법

제49조(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) ①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(農地臺帳)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자·임대차 정보·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.

- ③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·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(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.
- ⑥ 농지대장의 서식·작성·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)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·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
2.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50조(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) ①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.

②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자경(自耕)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.